

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 [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2. 7. 19.>](#)

제10조(협회의 설립) ①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](#)

1. 정관
2.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
3. 회원의 명부
4.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
5. 창립총회 회의록

제11조(정관)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
5. 임원에 관한 사항
6. 업무에 관한 사항
7.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9. 해산에 관한 사항
10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
제12조(업무)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 [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](#)

1.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
2. 물류터미널사업의 진흥 ·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· 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 · 조사 · 연구사업
3.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
4. 물류터미널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
5.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달린 사업

제12조의2(기반시설) 법 제20조제2항에서 "도로 · 철도 · 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[<개정 2014. 7. 14., 2018. 1. 16.>](#)

1.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
2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
3. 「수도법」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
4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

[본조신설 2012. 11. 27.]

[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[<2012. 11. 27.>](#)]

제3장의2 물류창고업 [<신설 2012. 2. 2.>](#)

제12조의3(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)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물류창고업자"라 한다)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) 및 상호